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.
-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.
-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체육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료 개방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폐기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13조)
-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규정(별표 2, 별표 3)
-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료 삭제(별표 2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T/F팀과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규제를 자체 정비 개선하고
-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및 구미시 체육회관 회의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3조에서 폐기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사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,
- 별표 2, 3에서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규정하고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료를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•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이 되는 조항을 자체 정비하여 삭제하고 2015. 7월 준공 예정인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조례에 공원 내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,
또한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을 위해 구미시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 시 기존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국민생활체육회에 2만원,

그 외의 단체에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